



배포 일시	2023. 2. 10.(수)			
담당 부서 <총괄>	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우철 (044-201-3504)
		담당자	서기관	김태훈 (044-201-3507)
			사무관	김효석 (044-201-4597)
보도일시	2023년 2월 10일(금) 10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건설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선정 ·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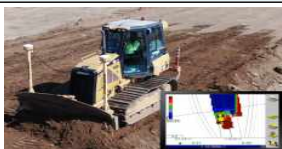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10일(금) 오전 10:30 정부서울청사에서 “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(경제부총리 주재)”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.
-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, 다양한 규제들이 업계 부담 가중과 함께 건설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 -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TF*를 구성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,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규제개선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.
- * 국토부(건설정책국장), 건설협회·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, 건산연·건기연 등 4개 연구기관
-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

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

-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.

< 스마트 건설기술(예시) >

[건설기계 MG/MC]	[건설기계 원격조종]	[바닥판 설치 로봇]	[외벽 페인팅 로봇]
			

①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완화

- (현행)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**표준시방서***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곤란하였다.

*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“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지만,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선불리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”(A건설사)

⇒ (개선) 올해 1월 마련한 MC·MG*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고,

* **MC (Machine Control)** :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
MG (Machine Guidance) :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

-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·안전관리 공통기준 마련('23.12)도 추진한다.

②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

- (현행) 모듈러, MC·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워 현장 활용이 곤란하였다.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“시공사는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제안하였지만, 기준 단가가 없어 총사업비를 편성하기 곤란하여 기존 공법을 선택”(D공사)

⇒ (개선)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, MC·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(표준품셈 등 공고, '23.12)하여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

- (현행) 건설 신기술 지정시* 2차 심사시 평가 항목인 ‘시공실적’을 신청 단계부터 요구하며,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이 증가하고 1차 심사 탈락**시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무의미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.

* (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) 기술개발 → 시험시공 → 지정 신청 → 1차 심사(신규성·진보성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KAIA)) → 현장실사 → 2차 심사(경제성·현장적용성·보급성, KAIA) → 지정(국토부)

** '21년 신기술 지정 신청 중 1차 심사 결과 : 60건 심사 중 탈락 35건(탈락률 58%)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“새로 개발한 신기술의 시공실적 확보에 5억원을 투자하였는데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손실 처리, 향후 신기술 개발 도전은 쉽지 않을 듯”(C엔지니어링사)

- ⇒ (개선)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, '23.6)하여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고,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.

④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 간소화

- (현행) 300억원 이상 공사의 일반 턴키 입찰시 요구하는 서류(15종)를 소규모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에도 동일하게 요구하며 건설사의 입찰 부담이 가중되었다.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“50억원의 소규모 공사를 입찰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서류준비 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입찰을 포기하는게 합리적”(B건설)

- ⇒ (개선)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(15종 → 5종,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개정, '23.7)한다.

□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.

① 건설골재 채취절차 간소화

○ (현행) 건설골재 채취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고, 채취시마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중복규제 논란이 존재하였다.

* (하천골재) 채취계획 수립 → 채취예정지 지정 협의 → 문화재 지표 조사(문화재청) → 환경영향평가(환경부) → 채취예정지 지정(광역지자체) → 골재채취허가(기초지자체)

< 현장의 목소리 >

◇ "공사착공을 위해 골재가 필요한데 인근에 **골재채취예정지**를 지정하기에는 **장기간 소요**,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**타지역**에서 골재를 조달하는 수밖에"(C건설)

⇒ (개선)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, **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**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.(골재채취법 개정, '23.9)

②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

○ (현행)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*으로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되었다.

* (중복사항) 근로자 안전활동 및 보건계획, 재해시 대피 방안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내용

< 현장의 목소리 >

◇ "안전 관련 서류작성에 **많은 시간**을 빼앗기다보니 정작 **현장 안전점검**을 위한 시간은 줄어드는 상황, 서류작성보다 **실질적 안전활동**이 중요"(현장소장 a)

⇒ (개선) 두 계획서 간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**핵심 위주로 간소화**(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, '23.6)하여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**안전활동에 집중**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③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

- (현행)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으나, 「주택법」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하여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.

* 법제처 법령해석(주택법상 주택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)에 따라 주택 사업도 착공 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민원 회신 중이나, 법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"추진 중인 주택 사업장의 지하안전평가 협의 미완료로 사업승인 지연, 착공 신고 전까지만 협의를 완료하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"(F시행사)

⇒ (개선)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화 한다.(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, '23.6)

④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

- (현행)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.

< 현장의 목소리 >

- ◇ "안전관리 우수업체 벌점경감 제도('23.1 시행)는 우리처럼 빈틈없는 안전관리 노력으로 벌점이 없는 업체들이 소외되는 문제 발생"(E건설사)

⇒ (개선)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(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, '23.3)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다.

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

- (현행)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되어, 기계설비 규모가 작아도 연면적이 큰 경우 높은 등급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였다.

< 현장의 목소리 >

◇ “우리 축사(연면적 3만㎡)는 냉·난방 설비, 위생설비 등 기본 설비만 갖추고 있는데 고급 유지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것은 부담”(A 농장주)

⇒ (개선)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.(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, '23.12)

□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”면서,

○ “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우철 (044-201-3504)
		담당자	서기관 김태훈 (044-201-3507) 사무관 김효석 (044-201-4597)
<공동>	기술혁신과	책임자	과 장 유병수 (044-201-3561)
		담당자	사무관 윤상원 (044-201-3570)
<공동>	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성훈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 유연형 (044-201-3558)
<공동>	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 이종문 (044-201-4585)
<공동>	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신윤근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 전 진 (044-201-3574)

1 과제별 추진일정

세부 과제		조치계획	일정
1.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전환 본격화			
①	스마트 건설기술 공사현장 적용부담 완화	시공기준 등 제정	'23.12
②	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	표준품셈 등 공고	'23.12
③	신기술 지정을 위한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	'23.6
④	스마트터키 제출서류 간소화	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	'23.7
2. 중복 ·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			
①	건설골재 채취절차 간소화	골재채취법 개정	'23.9
②	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	'23.6
③	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	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	'23.6
④	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	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	'23.3
⑤	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확대	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	'23.12

2 과제별 담당자

세부 과제		소관부서	담당자
1.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전환 본격화			
①	스마트 건설기술 공사현장 적용부담 완화	기술혁신과	양성모 사무관 044-201-3568
②	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	기술혁신과	윤상원 사무관 044-201-3570
③	신기술 지정을 위한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	기술정책과	유연형 사무관 044-201-3558
④	스마트터키 제출서류 간소화	기술혁신과	박유서 사무관 044-201-3564
2. 중복 ·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			
①	건설골재 채취절차 간소화	건설산업과	고명윤 사무관 044-201-3539
②	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	건설안전과	전진 사무관 044-201-3574
③	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	건설안전과	김석태 사무관 044-201-3584
④	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	건설안전과	이정훈 사무관 044-201-4593
⑤	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확대	건설산업과	이종문 사무관 044-201-4585